#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97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조경태·김성원·김상훈

김대식 · 정연욱 · 조지연

박준태 • 박성훈 • 곽규택

권영세 의원(10인)

####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물류·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기 계약이 대부분으로 동일 선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선사 내에서 근무지(선박) 이동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퇴직금의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노후 생활자금의 부족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 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 나.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 6부터 제55조의13까지 신설).
- 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 라.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8 신설).
- 마.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 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의19 및 제55조의20 신설).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선원퇴직연금"이란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 박소유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 립하고, 선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10의3. "선원퇴직연금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선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
  - 나.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다. 선원의 선택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원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6(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선원퇴직연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5조의7(선원퇴직연금등의 우선변제) ① 선박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55조의9제2항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제55조의11제5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미납입 부담금 및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선원퇴직연금등"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4년간의 선원퇴직연금등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55조의8(선원퇴직연금사업자) ① 제55조의6의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선원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 2. 기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서류
- 제55조의9(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6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소 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 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 관한 사항
  - 2.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3. 선원퇴직연금 수준에 관한 사항
  - 4.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5. 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6. 선원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 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7.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8. 가입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 지급사유 발생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9.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3호의 선원퇴직연금 수준은 선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평균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5조의10(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등)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선원퇴직연금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8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선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산정한 금액

- 2. 가입선원과 가입선원이었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원퇴직연 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선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

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선박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가입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원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선원퇴직연금 전액(사업의 도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가입선원 및 선원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⑥ 선박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선원 퇴직연금 수준이 제55조의9제2항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퇴 직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선원퇴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11(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6에 따라 소속선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6. 제55조의9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1호의 부담금 중 선박소유자의 부담금은 가입한 선원의 연간 승선평균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선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선원은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⑤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선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

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 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선박소유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선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선원의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가입 선원은 퇴직할 때에 받을 선원퇴직연금을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선원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선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선원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1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선원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반기마

- 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선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5조의1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 다.
  - 1. 선원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선원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 원으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 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대한 정보제 공에 관하여는 제55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선원퇴직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장려금)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선원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한다.
  - ③ 장려금의 지급은 제55조의6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선원 중 제55조의16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15제2항의 해당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은 장려금 지급 대상기간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 ④ 연간 출연금의 운영수익 총액이 제2항에 따른 선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 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장려금의 적립기준, 선원별 적립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의15(가입기간) ① 제5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11제1항제6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해당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

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제55조의16(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제55조의9제1항제5 호 및 제55조의11제1항제6호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원퇴직연금급여: 10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60세 이상의 선원 에게 지급하는 급여
  - 2. 퇴직일시금: 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원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하는 급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1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선원도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 주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퇴직연금급여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의 지급은 수급요건을 갖춘 해당 선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원이 60세 이후에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는경우 또는 제55조의6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수급요건을 갖춘 선원이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해당 선원이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17(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선원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원퇴직연금사업 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 1. 운용관리업무

- 가.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나.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 다.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 보관 · 통지
- 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지시

## 2. 자산관리업무

- 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나. 부담금의 수령
- 다.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라. 선원퇴직연금의 지급
- 마.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지시의 이행
- 3.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퇴직연금사업

자는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 선원이 부담한다.
- ④ 제55조의11제4항 및 제55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선원이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선원이 부담한다.
- 제55조의18(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 2.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노사단체 및 선 원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 3.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5조의19(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법령 및 선원퇴직연 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선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선원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선 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선원에게 해당 사업의 선원퇴직연금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

시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55조의20(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이법을 준수하고 가입선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제55조의17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한다.
  - ③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5조의17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2. 그 밖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계약체결 시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2.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경비를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3. 가입선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운용 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55조의21(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 원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선원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내부규정, 지침 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55조의2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선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2. 선원(선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55조의2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에 관 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요청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및 요청방법 등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5조의24(소멸시효) 선원의 선원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07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52조 중 "퇴직금"을 "퇴직금, 선원퇴직연금"으로 한다.

제1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5조의23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제3호 중 "아니하였을 때"를 "아니하였거나, 제55조의9제2항의 선원퇴직연금 수준 및 제55조의11제2항의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퇴직 시 정당한 선원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의19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55조의20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5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4의3. 제55조의21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퇴직연금사업자

제178조 본문 중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를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0조의2"로, "제174조제1호·제2호"를 "제174조제1호·제2호

·제4호의2·제4호의3"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55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 한 선박소유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u>10</u> 의2. "선원퇴직연금"이란 선 |
|                     | 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            |
|                     | 하여 선박소유자가 일정금액             |
|                     | 이상을 부담하여 선원퇴직연             |
|                     | 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선원            |
|                     | 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           |
|                     | 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            |
|                     | <u>다.</u>                  |
| <u>&lt;신 설&gt;</u>  | 10의3. "선원퇴직연금제도"란          |
|                     |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                     | 가. 선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           |
|                     | 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                     | 나.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선           |
|                     | 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
|                     |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
|                     |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              |
|                     | 형퇴직연금제도"                   |
|                     | 다. 선원의 선택에 따라 선박           |
|                     | 소유자가 납입한 일시금이              |

11. ~ 23. (생 략) <u><신 설></u> 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원퇴직연금제도로서 급 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1. ~ 23. (현행과 같음)
제55조의6(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선박소유 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선원이 요구 하는 때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선원퇴직연금을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7(선원퇴직연금등의 우

<신 설>

선변제) ① 선박소유자에게 지 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55조 의9제2항에 따른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제도의 연금, 제55조의11 제5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 한 지연이자(이하 "선원퇴직연 금등"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 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 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4 년간의 선원퇴직연금등은 선박 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 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u>제55조의8(선원퇴직연금사업자)</u> <u>① 제55조의6의 선원퇴직연금</u>

<신 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이 하 "선원퇴직연금사업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등록한 선원퇴직연금 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 2.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

제55조의9(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 유자는 제55조의6에 따라 노동 조합 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u><신 설></u>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 금규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 관 한 사항
- 2.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3. 선원퇴직연금 수준에 관한 사항
- 4.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에 관한 사항
- 5. 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 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6. 선원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 약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 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7.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 <u>항</u>
- 8. 가입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 지급사유 발생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9.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

<신 설>

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선원퇴직연금 수준은 선원의 퇴직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 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10(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선원퇴직연금 지급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 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8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 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원퇴 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 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 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과 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 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 라 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 율을 말한다.

-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선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에 드는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산정한 금액
- 2. 가입선원과 가입선원이었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선원퇴 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원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선원의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면으로 알리고,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었는 경우에는 전체 선원에게 서면,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선박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선원되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수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가입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을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원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 급의무가 있는 선원퇴직연금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 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 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가입선원 및 선원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신 설>

⑥ 선박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선원퇴직연금 수준이 제55조의 9제2항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선원퇴직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선원퇴직연금이 가지 당한 기업을 하당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전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11(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① 확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
6에 따라 소속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
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 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사항
- 6. 제55조의9제1항제1호, 제2호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1호의 부담금 중 선박소유자의 부담금은 가입한 선원의 연간 승선평균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 선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선원은 제2항에 따라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 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 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 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⑤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선원의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정 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 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 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부담 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선박소유자는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제도 가입 선원의 퇴직 등 선원퇴직연금의 지급 사유 가 발생한 때에 그 선원에 대 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

자를 해당 선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 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가입 선원은 퇴직할 때에 반을 선원퇴직연금을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선원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선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선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선원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12(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55소의12(확성기여영퇴식연급 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 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 금제도의 가입 선원은 적립금 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

<신 설>

위탁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 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거나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 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 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 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 여야 한다.
- ③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에 관한 정보 등 가입선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의1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1. 선원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선원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 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원으로서 자기의 부담 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u><신</u>설>

<신 설>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
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55조의 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선원 퇴직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장려금)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

① 전원되식연금사업사는 신원 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 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선 원퇴직연금 가입 선원별로 적 립하여 지급하며, 선원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 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은 제55조의6 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선원 중 제55조의16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제55조의15제2항의 해당 선 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 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 은 장려금 지급 대상기간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④ 연간 출연금의 운영수익 총 액이 제2항에 따른 선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의 적립기준, 선원별 적립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15(가입기간) ① 제55조 의9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11

<신 설>

제1항제6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 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선원퇴 직연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55조의16(선원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제55조의9제1 항제5호 및 제55조의11제1항제 6호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의 종 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선원퇴직연금급여: 10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60세 이상의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2. 퇴직일시금: 연금의 수급요 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원퇴 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하는 급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퇴 직연금제도 도입 1년 이내에

<u>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부담금</u> 을 납입한 선원도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퇴 직연금급여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의 지급은 수급요건을 갖춘 해당 선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원이 60세 이후에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제55조의6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수급요건을 갖춘 선원이 제 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선원퇴직연금사업 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 한다. 이 경우 해당 선원이 선 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17(선원퇴직연금제도 설

<신 설>

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선원되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원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해당한다.

## 1. 운용관리업무

- <u>가.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u> 방법별 정보의 제공
- <u>나.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u> 계리
- 다.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통지
- 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

   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운

   용지시

## <u>2. 자산관리업무</u>

 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나. 부담금의 수령

 다.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라. 선원퇴직연금의 지급

 마.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

 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운

## 용지시의 이행

- 3.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선원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퇴직연금 사업자는 일부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 건 등을 갖춘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 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수행 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 선원이 부담한다.
- ④ 제55조의11제4항 및 제55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선원이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선원이 부담한다.
- 제55조의18(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선원퇴직연 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수 있다.
  - 1.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u><신 설></u>

## 기금 출연

- 2.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노사단 체 및 선원퇴직연금업무의 수 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 3.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5조의19(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법령 및 선원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
  선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
  - <u>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u>행하여야 한다.
  - ② 선원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선원에게 해당 사업의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도모할 목적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
- 제55조의20(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차무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선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제55 조의17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③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5조의17에 따른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2. 그 밖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계약체결 시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의 손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2.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 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3. 가입선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선원퇴직연금제도 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신 설>

<u>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u> <u>방법을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u> 유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 수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1(선원퇴직연금사업자 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 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 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 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선원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선원퇴 직연금사업자의 내부규정, 지침 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의22(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 ① 선원퇴직연 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 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

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선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2. 선원(선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원퇴직연금의지급에 관한 사무
- ②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5조의2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 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및 요청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37조를 준용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 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⑥ · ⑦ (생 략)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 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 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 거나 압류할 수 없다.

| 목적  | 외의  | 용도로 | 이용하여서 |
|-----|-----|-----|-------|
| 는 아 | ·니된 | 다.  |       |

제55조의24(소멸시효) 선원의 선 원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부담 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07 | 7조( | 선원 | [정     | 책フ | 본계  | 획으 |    | 수          |
|------|-----|----|--------|----|-----|----|----|------------|
| 립    | 등)  | 1  | $\sim$ | 4  | (현형 | 빙과 | 같은 | <u>-</u> ) |

| (2) | <br> | <br> | <br> |
|-----|------|------|------|
|     | <br> | <br> | <br> |
|     | <br> | <br> | <br>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          | -퇴직금, | 선원퇴직연 |
|----------|-------|-------|
| <u> </u> |       |       |
|          |       |       |
|          |       |       |

제167조(벌칙) (생 략)

<신 설>

-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아니하였을 때

<신 설>

 3의2.
 (생 략)

 4. ~ 17.
 (생 략)

 <신 설>

| 제167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 |
|-----------------------------|
| 의 부분과 같음)                   |
| ② 제55조의23제2항을 위반한           |
|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70조(벌칙)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3                           |
|                             |
| 아니하였거나, 제55조의9제2            |
| 항의 선원퇴직연금 수준 및              |
| 제55조의11제2항의 부담금을            |
|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             |
| 니하여 선원이 퇴직 시 정당             |
| 한 선원퇴직연금을 지급받지              |
| 못하였을 때                      |
| 3의2. 제55조의19제3항제1호에         |
|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
| 4. ~ 17. (현행과 같음)           |
| 제170조의2(벌칙) 제55조의20제3       |
| 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선원퇴            |
| 직연금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            |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4의2.·4의3. (생략)

5. (생략)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u>제174조제1</u> 호·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 에 처한다.                              |
|-------------------------------------|
| 제174조(벌칙)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4의2. 제55조의21제1항에 따른                 |
|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
|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퇴직연                      |
| <u>금사업자</u>                         |
| 4의3. 제55조의21제2항에 따른                 |
|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보완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                     |
| <u>퇴직연금사업자</u>                      |
| <u>4의4.</u> ・ <u>4의5.</u> (현행 제4호의2 |
| 및 제4호의3과 같음)                        |
| 5. (현행과 같음)                         |
| 제178조(양벌규정)                         |
|                                     |
|                                     |
|                                     |
|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
| 제170조의2                             |
| - <u>제174</u> 조제1호·제2호·제4호          |
| 의2·제4호의3                            |
|                                     |

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9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2. (생 략) <u><신 설></u>

4. ~ 6. (생략)

③ ~ ⑤ (생 략)

| <u>.</u>            |
|---------------------|
| 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
| <u> </u>            |
| ②                   |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
| 3의3. 제55조의19제2항을 위반 |
| 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
|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 4. ~ 6. (현행과 같음)    |
| ③ ~ ⑤ (현행과 같음)      |